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6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양부남 · 윤준병 · 정준호
김한규 · 김남희 · 박은정
민병덕 · 조계원 · 박선원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호·복지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구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2. (생략)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 <u>(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제40조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 <u>(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